

훈련기록부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00-04-30
(개정) 2000-10-19
(개정) 2004-07-20
(개정) 2009-09-14
(개정) 2010-05-03
(개정) 2012-09-21
(개정) 2016-04-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훈련기록부에관한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49호)에 따라 강원도립 대학교(이하 “본대학” 이라 한다)의 훈련기록부의 기록,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 <개정 2016.4.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기록부” 라 함은 해기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중 일부를 선박 또는 육상에서 훈련받은 사항을 기록·증명할 수 있도록 훈련기록부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정한 서식을 말한다.
2. “승선실습” 이라 함은 선박에서 행하여지는 실습생의 훈련을 말한다.
3. “육상실습” 이라 함은 선원업무처리지침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육상실습장에서 행하여지는 실습생의 훈련을 말한다.
4. “실습생” 이라 함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승선실습 또는 육상실습을 받는 자를 말한다.
5. “해당학과장” 이라 함은 본 대학의 해양경찰학과과장을 말한다.
6. “감독자” 라 함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정감독자” 라 함은 본대학 실습선의 선장으로부터 지명받아 실습생 개개인의 훈련을 담당하여 실습과제를 주기적으로 검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8. “평가자” 라 함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9. “교원” 이라 함은 학과 교수를 말한다.

제3조(실습선에서의 훈련) ① 승선실습에 대한 감독자는 지도교수가 되며, 훈련 기록부에 의거하여 승선실습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승선실습 감독자는 승선실습계획서에 의해 실습을 진행시키고 실습과제에 대한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실습진도에 대한 의견과 날짜를 훈련기록부에 기록한다.

③ 승선실습 평가자는 실습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면허보다 동위 또는 상위의 면허를 가진 지도교수가 되며,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훈련기록부에 평가형태를 기재한다.

제4조(육상실습장에서의 훈련) ① 실습생이 훈련기록부에 의한 실습과제를 육상 실습을 통하여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원이 감독자와 평가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감독자와 평가자는 실습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면허보다 동위 또는 상위의 면허를 가져야 한다.

제5조(훈련기록부에 의한 실습평가) 훈련기록부에 의한 실습의 평가방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평가자의 자격은 실습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면허보다 동위 또는 상위의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2. 평가는 실습생이 해기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실시한다.
3.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평가항목을 STCW 번호에 따라 열성도, 이해도, 기능도로 분리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40%, 30%, 30%의 비율을 배정하여 점수화한다.

제6조(훈련기록부의 관리 및 유지) ① 승선실습 감독자는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선실습을 실시하고, 승선실습기간 동안 훈련기록부를 기록·관리한다.

② 실습생이 승선실습계획기간까지 승선실습을 이행하지 못할 사항이 발생하면, 선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무국장에게 서면통보하고 사무국장은 해당 실습생의 선원수첩 하선공인을 받는다.<개정 2012.9.21>

③ 사무국장은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육상실습인정서를 받은 후 승선실습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승선실습 감독자는 그 내용을 훈련 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2010.5.3> <개정 2012.9.21>

④ 지도교수는 실습생의 총 승선실습이 완료한 직후 또는 졸업일까지 훈련기록부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2.9.21>

⑤ 해당학과장은 실습생의 해기사양성과정 필요이수교과목 이수여부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2.9.21>

⑥ 사무국장은 실습생의 훈련기록부를 실습생이 졸업한 후 5년간 보관한다.<개정 2012.9.21>

제7조(승선실습증명서의 발급) ① 사무국장은 훈련기록부의 기재사항과 해기사 양성과정 필요 이수교과목 이수여부를 확인한 후, 훈련기록부에관한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승선실습증명서를 작성한다.<개정 2012.9.21>

② 총장은 승선실습증명서를 증명·발급한다.

제8조(지침의 효력) 이 지침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00. 4. 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1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2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4)

이 개정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3)

이 개정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21)

이 개정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5)

이 개정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